

대한공증인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남 상 우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우리 협회는 1979년 비인가 단체로 출발하여 1999년에 법정단체가 되었으며, 2010년 4월에 이르러 비로소 ‘대한공증인협회’의 명칭과 조직을 갖추고 공증인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올 3월 출범한 20대 집행부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어져 온 추대 형식을 탈피하여 입후보 등록을 거친 선거 방식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협회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조인 2만 명 시대의 도래와 4차 산업혁명을 말할 정도로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변화에 맞서 공증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절실한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평가합니다. 20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이와 같은 생각을 결집하여 협회를 새롭게 도약시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증인법에 따르면,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립된 우리 대한공증인협회는 회원이나 사무직원을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하고, 공증인을 대신하여 공증서류 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

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지금까지 공증 인법이 부여한 이와 같은 협회의 의무나 역할에 과연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자문해 봅니다. 솔직히 아직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공증사무소에서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회원들을 지도 하기 위해서 협회장에 취임한 뒤 제일 먼저 공증실무 상시자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의문이 생기는 경우 문자로 질의하면 상담위원이 전화를 걸어 바로 답변하는 시스템입니다. 5개월여 기간에 불과하지만 매달 20여 건 이상의 질 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증실무에 정통한 상담위원이 곧바로 답변해 줌으로써 업무처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된다면 공증 사무소에서 굳이 법무부에 직접 공증업무에 관해서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상시자문위원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협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답변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와도 협의를 거쳐 정확한 답을 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쌓인 자문 내용은 나중에 자료집으로도 펴낼 예정입니다.

상시자문제도만으로는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협회 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공증실무지침서가 필요합니다. 어지간한 의문사항은 모두 그곳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쉽고 충실해야 합니다. 2004년 ‘공증실무’에 이어 2013년 ‘공증실무 개정판’이 발간되었지만 실무지침서로는 많은 점에서 부족합니다. 대법원에서 펴내는 ‘법원 실무제요’ 처럼 제대로 된 실무지침서가 발간된다면 이제 공증업무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공증실무에 정통한 공증인들을 모

서 지난 9월 ‘공증실무제요 발간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제 임기 내인 2019년 중에는 발간될 수 있도록 집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공증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지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도 필요합니다. 특히 공증수수료 할인행위는 협회가 강력하게 감독하여 이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서 중국에는 공증업계 전체를 공멸하게 만들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미 19대 집행부 때 협회는 공증브로커와 결탁하여 수수료 할인을 일삼는 회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비위 회원사무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고, 이로써 일부 공증인들이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 결과 공증인자격을 상실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로운 공증사무소가 공증브로커와 결탁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집행부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공증브로커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미 제2기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증인법 개정안에는 공증사건의 소개·알선 행위 등을 한 공증인, 사무직원, 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고질적인 부조리를 근절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협회는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의 일부 위탁을 건의하였고, 법무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조사위원회와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협회가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은 회원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칙을 일삼는 극소수 회원들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절대 다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 점 회원님들께서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공증인이나 사무직원을 상대로 매년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해 1월 중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칙으로 공증인연수원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증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10년으로 저절로 깨우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증인은 필요한 경우 촉탁인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촉탁인에게 제대로 설명하려면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누구보다도 먼저 접합니다.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려면 새로운 유형의 계약에 관해서도 공부해야 합니다. 회사의 의사록을 공증하려면 끊임없이 바뀌는 회사법 분야에 대하여도 정통하여야 합니다. 공증인 혼자서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협회의 연수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공증인연수원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연수 교육이라고 한다면 매년 9월 공증주간에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보조자 교육이 전부입니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는 엄연히 심각한 협회 의무의 태만입니다.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변호사단체의 연수 교육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연수 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협회는 지난 6월 개설한 네이버 밴드 ‘대한공증인협회’라는 가상공간에서 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회원들이 밴드에 가입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회원들의 밴드에 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됩니다.

공증인법에 따르면 협회는 통합보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합보관시설의 설치·운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고 협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증서류의 보존은 흔히 ‘제2의 공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공증서류의 보존이 중요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관된 공증서류에 의하여 재차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보존된 공증서류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문서의 진위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증서류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 공증의 신뢰가 제고된다는 뜻입니다. 공증사무소가 없어져도 공증서류는 계속 보존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공증서류를 다른 공증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담만 떠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협회가 통합보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공증서류의 보존 제도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은 지나치게 짧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존기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협회의 통합보관시설의 설치·운영은 이러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통합보관시설의 설치·운영 경험은 법무부가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증서류의 전자보관 업무를 협회가 담당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통합보관시설의 설치·운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공증인법은 협회의 설립 목적의 하나로 공증제도 개선을 들고 있습니다. 작게는 현행 공증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새로운 공증제도가 도입·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제도 개선은 협회가 앞장서고 공증인들이 뒤에서 밀어줄 때 비로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새 집행부는 출범 후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등을 공식 예방하여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인 법무부와의 간담회 결과는 바로 성과를 나타내어

협회와 법무부 간 공증실무협의회를 발족하였고, 지난 9월에는 제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담당 실무자와 협회 임원들이 함께하는 밴드를 개설하여 수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법무부와 협회가 공식적이면서도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협회는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유관기관에 대하여도 공증업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가령 인도집행증서의 집행문 부여 허가 기관인 법원이 허가를 마냥 미루는 경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증된 예금채권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유관기관을 상대로 풀어가야 할 일입니다.

협회는 이런 작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입법을 요하는 큰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무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힘써야겠지만 때로는 공증인들의 입법부 구성원들과의 인맥관계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학회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언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협회는 신탁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 등과 같은 사후에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증을 필수화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증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협회의 의무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재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상근 직원 2명이 회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사정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회무의 증가로 사무국 직원

이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관도 마련해야 합니다. 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몇 년 전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73명의 임명공증인과 262개소의 인가공증인 및 그 소속 1,044명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이 단지 초라하게 비친다고 해서 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인연수원이나 통합보관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회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업비를 마련하느냐입니다.

아시다시피 협회의 수입은 회비, 입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흔히 연회비라고 일컫는 것으로 현재 정회원 중 임명공증인은 27만 원, 인가공증인은 5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로 인한 연 수입은 약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입회비는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현재 1백만 원이지만 인가공증인의 신규 입회는 거의 없고 임명공증인의 경우는 많아야 1년에 수 명에 지나지 않아 기대할 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실적회비는 장부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현재 증서원부, 인증부, 확정일자부 각 1권을 기준으로 할 때 각 8,000원, 5,000원, 2,500원인데, 매년 실적회비로 약 1억 5,0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비와 찬조금은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이므로 위 연회비와 실적회비 외에 약간의 입회비를 합친, 매년 3억 2천만 원 정도가 결국 협회의 수입의 전부입니다. 지출은 보통 매년 대략 3억 2천만 원 정도이지만 국제행사나 공증주간 행사가 있는 해에는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어 적자입니다.

2017년 협회 사업은 선거에 의한 협회장 선출로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서 국제업무비를 대폭 아끼면서 항목 간 변경 지출로 겨우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가고 있

지만 당장 내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입 직원채용이나 회무관리 프로그램개발, 본격적인 조사위원회 및 공증실무제요 발간위원회의 활동 등만으로도 재정이 부족할 것이 명백합니다. 게다가 당장 내년에는 법제업무에 관한 협회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법제위원회와 20대 집행부 취임 이후 일단 뒤로 미루어 놓은 CAAs 활동과 국제교류업무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기존 조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새로 출범할 법제위원회와 국제위원회 활동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이런 연례적인 사업만 하기에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복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통상적인 사업의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 요인은 연회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회비는 임명공증인 정회원은 27만 원, 인가공증인 정회원은 54만 원입니다. 의결권 수의 증가성이나 정회원에 따른 회무의 부담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등하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시에 준회원의 수가 많은 적든 회비 부담에 차이가 없다는 점 역시 불합리합니다. 준회원의 수에 따라 차등 부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원관리 업무의 상당부분이 준회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연수교육 등 회무의 많은 부분이 준회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회원으로 간주되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대표를 제외한 공증담당변호사의 수에 따라 일정액의 연회비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회비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한다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연회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실적회비도 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얼마간 인상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 사업은 이와 같이 연회비와 실적회비 조정을 통해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된 기금은 역대 협회장 및 임원들의 노고로 약 9억 원 상당이 적립된 상태로 몇년째 더 이상 적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관 건립기금과 같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특별회비를 징수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 각 회원님들에게 보내 드린 서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수초과수수료를 산정할 때 표지도 독립된 장수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입니다. 법무부를 설득하여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아 낸다면 공정증서 작성 1건 당 1,500원씩 더 받을 수 있고, 인증 1건 당 25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수수료 중 전부나 일부를 특별회비로 목표금액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회원들 입장에서는 특별회비를 부담하면서도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추가로 더 받게 되는 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회원님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공증과신뢰’가 어느덧 제10호에 이르렀습니다. 협회가 지난 10년 동안 이정도 발전하게 된 것은 ‘공증과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회지를 창간하신 제14대 조희중 협회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일하는 협회’를 모토로 내걸고 출범한 제20대 집행부는 이제 ‘회원을 위한 협회’로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증인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회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